

① 개정 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매립·간척 토지 분리과세 적용일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공사준공인가일부터 4년 이내 -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 이내	<input type="checkbox"/> 매립·간척 토지 분리과세 시점을 취득 시기와 일치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공사준공인가일부터 4년 이내 -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 이내 ⇒ 사용승낙일·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부터 4년 이내

□ 개정 내용

- 매립·간척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 시점과 취득세 취득 시점* 일치
 - '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·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, 사용승낙일·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'부터 분리과세 적용

* 매립·간척 토지에 대한 취득일

- ① 공사준공인가일
- ②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승낙일·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

□ 적용 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

|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12조(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) 제102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